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43
----------	------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4일 이영실 의원 외 12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해 10월 입양 뒤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사망한 16개월 아동의 사망사건을 포함하여 잇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인력 및 통·반장에게 아동학대 인지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게 알리고 조사 및 사례관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가. 찾동 업무 수행인력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등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나. 통반장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찾동에 신고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2항)
- 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잇단 아동학대범죄에 따른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의안번호 2143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찾동 업무 수행인력 및 통반장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알리고 조사 및 사례 관리에 협조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아동학대대응 및 협조) ①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찾동 업무 수행인력이 업무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22조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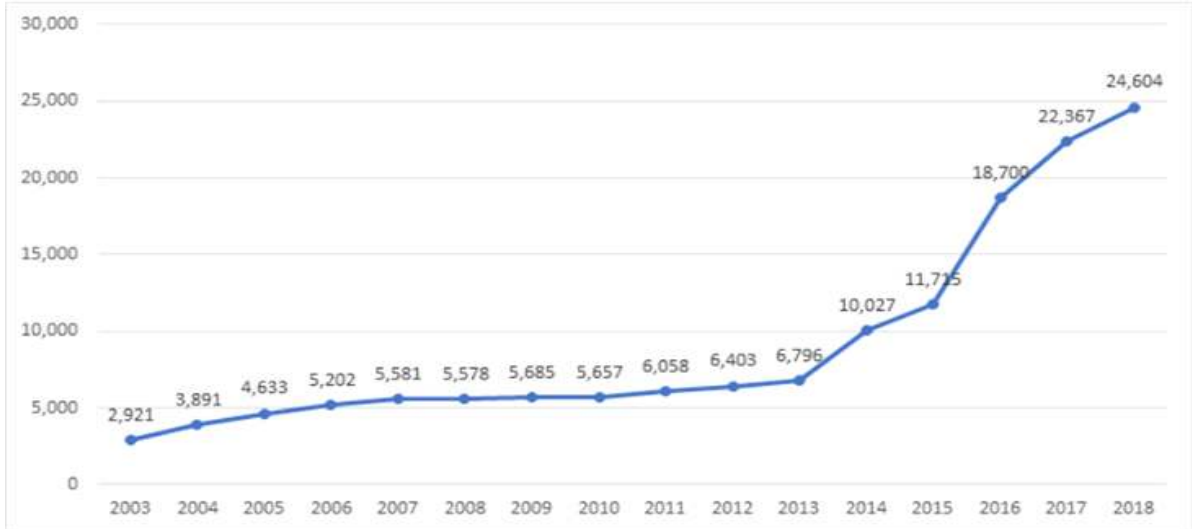
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이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통반장 등이 찾동 참여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찾동에 신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③ 찾동 업무 수행인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 작년 10월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사건 등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에 따르면 2019년 아동보호 기관에 학대로 신고 및 접수된 사례는 총 24,604건으로 2003년의 8배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2019.12).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통계정보보고서. P19

<그림>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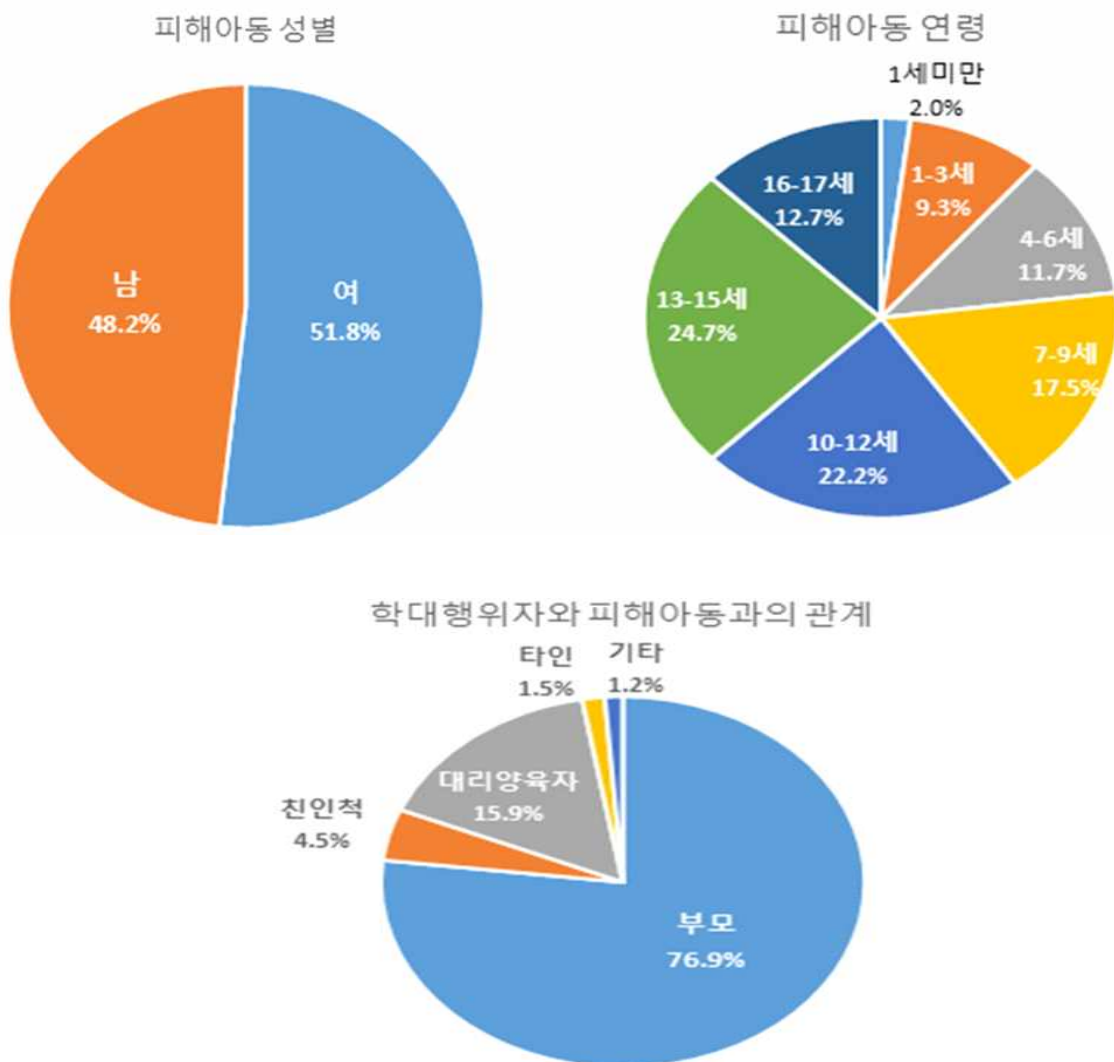
-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2개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아동학대사례 유형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2,367	24,604
신체학대	466	461	753	1,453	1,884	2,715	3,285	3,436
정서학대	909	936	1,101	1,582	2,046	3,588	4,728	5,862
성학대	226	278	242	308	428	493	692	910
방임	1,783	1,713	1,778	1,870	2,010	2,924	2,787	2,604
유기	53	-	-	-	0	0	0	0
중복학대	2,621	3,015	2,922	4,814	5,347	8,980	10,875	11,792

출처: 보건복지부(2019.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성별은 여아(51.8%)가 남아(48.2%)보다 약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연령은 13~15세(24.7%)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10~12세(22.2%), 7~9세(17.5%) 순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자(15.9%), 친인척(4.5%) 순으로 나타났음.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19-20, 24 그림 재구성

<그림>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빈번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주요 사항으로는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예정임. 또한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 및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그간 대응	보완 과제	기대효과
초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인력 기본적 조사역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전문성 강화 교육 ▶대응인력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적극 조치 위한 이행력 확보 	초기 대응에서 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합한 조치 이행
대응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업무여건 개선 ▶중앙 및 사도의 인력 지원체계 강화 	전담 인력의 안정적 업무 기반 확보로 대책의 현장 실행 뒷받침
분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 분리제도 도입('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분리 이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지자체 별 보호시설 격차 조정 체계 마련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회복
처벌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처벌강화 TF 운영 ▶민법 상 '징계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형기준 개선 제안 등 사법부 협력 강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캠페인 ▶학교, 지자체의 학대 발견 강화 	아동학대 근절 사회적 분위기 확산
입양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에 의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절차 전반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결연·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입양 아동 보호 강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2021.1.19.)

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현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주민센터 기능을 단순 민원·행정 처리에서 주민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및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의 책임과 주민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였음. 각 동에 배치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직접 발굴 및 방문 상담 후 서비스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한 사업임.

<표> 기존 동주민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교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주민이 신청하는 것만 제공 (서류발급, 소외계층 지원, 청소년원 등)	>>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
대상선정	주민이 내방 신청해야만 가능 (춤추지 않은 복지 서비스제공)	>>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곳 (통반장, 직능단체회원, 주민자치위원 등)	>>	주민 누구나 이웃을 위해 마을 활동에 직접 참여
공간	특별한 민원용무가 있어야만 찾는 곳 (민원신청, 지원요청 등)	>>	항상 열려있는 주민들의 공간 (커피 마시고, 책 보고, 회의하는 주민개방 공간)

- 사업의 대상으로는 출산가정, 양육가정, 65세 도래어르신, 돌봄위기가구, 빈곤위기가구가 있음. 특히 ‘돌봄위기가구’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전문기관¹⁾에 신고 된 의뢰가구 또는 신규 발굴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인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조사 사항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대상별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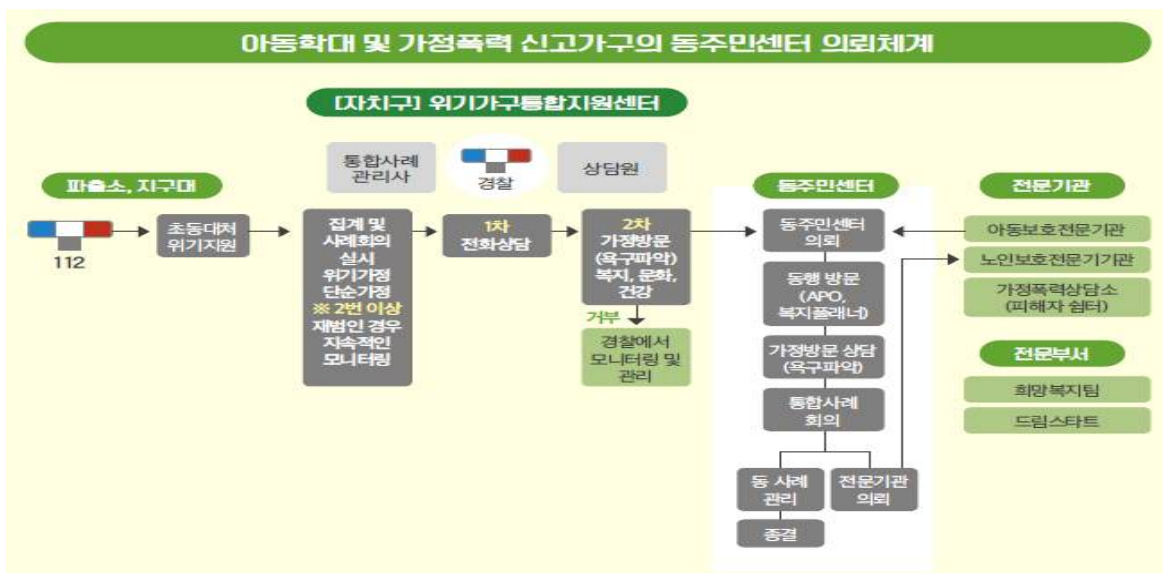
구분	출신가정	양육가정	65세 도래 어르신	돌봄위기가구	빈곤위기가구	
방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신가정 (만 0세-1세 미만) -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방문 후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만 3세) 보육비용 미수급 가정 (0세-취학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도래자 - 사전안내문 발송 후 동의자 - 내방민원 시 동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의뢰가구 신규발굴가구 - 학대, 폭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대상자 (급여수급자) 신규발굴자 - 은둔·취약 계층 등 	
업무 프로세스	대상자 명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에서 명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복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65세 도래 어르신 명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서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 의뢰가구 행복e음을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굴 대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명단 확인 복지통반장 주민 우리동네주무관 등을 통한 발굴 	
	대상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안내문 발송 2차: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안내문 발송 - 연행도래 30일 전 - 복지통반장 연계 방문안내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안내 전화 - 돌봄위기 전담복지플래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안내 전화 - 복지플래너 	
	방문일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플래너 2인 일정 협의 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일정협의 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위기전담 복지플래너와 지역사회기관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일정 협의 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플래너 2인 일정 협의 후 확정 	
	방문상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양육관련 자료 영유아발달체크리스트 및 양육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및 교통카드 신청 관련자료 복지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대상관련 복지서비스 기타복지 관련자료 	
	방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가족, 사회관계망 확인 복지서비스안내 복지공동체, 주민모임 등 관련 사업 안내 				
	상담 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복지통합시스템 및 행복e음 입력 빈곤·위기일 경우 동단위 사례관리 진행 방문상담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 여부 논의 폭력의심가구 발견 시 관련 기관 연계 				

출처: 20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복지·여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수행 인력은 복지플래너와 통반장 등이 있으며, ‘돌봄위기가구’ 방문 시에는 돌봄위기전담플래너 1인, 동 담당 복지플래너, 경찰(APO),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동행 방문

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건강 문제 발생 시 동 방문간호사와 동
 행방문이 가능함.

- 돌봄위기가구 사업내용은 체계적인 방문관리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실제로 돌봄위기(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의심가구 발견 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관련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단
 위 또는 구단위 통합사례회의 시 자치구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
 대(실무협의체)를 연계하여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례회의 및 자문
 의뢰하며, 아동학대(방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자치구
 드림스타트에 의뢰 및 연계 하고 있음. 본 사업은 대상자들의
 동단위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칫 은폐 될 수
 있는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20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복지·여성

<그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신고가구의 동주민센터 의뢰체계

라.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집행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통·반장 등 그 외 찾동 수행인력의 신고 규정과 찾동 수행 인력의 아동학대 조사나 사례관리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수행인력 및 통반장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및 사례관리에 협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쟁점사항은 없음.
-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97%가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이럴 경우 학대상황을 외부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기관 간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여 협력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속적이 관심이 필요함. 그러므로 동단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발견 및 개입을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착수 이후 6년이 지난 현 시

점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재모색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에서 주민 모두의 복지로 초점을 맞추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이런 측면에서 본 조례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사업 방향성 상 바람직하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이영실, 김경영, 김경우,
김소양, 김제리, 김혜련,
김화숙, 박기재, 이병도,
이정인, 전병주, 조상호,
최 선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지난해 10월 입양 뒤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사망한 16개월 아동의 사망사건을 포함하여 잇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인력 및 통·반장에게 아동학대 인지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게 알리고 조사 및 사례관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가. 찾동 업무 수행인력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등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나. 통반장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찾동에 신고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2항)

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동학대대응 및 협조) ①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찾
동 업무 수행인력이 업무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
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이나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통반장 등이 찾동 참여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
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찾동에 신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③ 찾동 업무 수행인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학대에

방센터등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3조의2(아동학대대응 및 협조)</u></p> <p>① <u>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 업무 수행인력이 업무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이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u></p> <p>② <u>제11조에 따른 통반장 등이 아동 참여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동에 신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u></p> <p>③ <u>아동 업무 수행인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나 사례관리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p>